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신고폐지 및 허가취소**
4. 청문일시(의견제출기간) : 2026.7.14.(화) 14: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회의실[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6. 대상무선국 : 「[붙임]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7.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미리 서면으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사)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대로 **처분(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만약, 위 청문일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자동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고지주소	처분 예정
1	진O스카이	942021560000607	간이무선국	진O청주5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동남로	신고 폐지
2		942021560000608	간이무선국	진O청주501		신고 폐지
3	(주)씨O씨 엔지니어링	942022560000506	간이무선국	씨O청주50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터로	신고 폐지
4		942022560000505	간이무선국	씨O청주502		신고 폐지
5		942022560000503	간이무선국	씨O청주500		신고 폐지
6		942022560000504	간이무선국	씨O청주501		신고 폐지
7	상O자율 방법대	442024550000004	육상이동국	상O자율방법V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터로	허가 취소
8		442024560000052	육상이동국	상O자율방법P1		신고 폐지
9		442024560000053	육상이동국	상O자율방법P2		신고 폐지
10		442024560000054	육상이동국	상O자율방법P3		신고 폐지
11		442024560000055	육상이동국	상O자율방법P4		신고 폐지
12	한O수	942016560000304	간이무선국	O수괴산50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남산1길	신고 폐지
13		942016560000305	간이무선국	O수괴산501		신고 폐지
14	이O원	942024550000041	간이무선국	O원음성700	충청북도 음성군 갑곡면 장감로218번길	허가 취소